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08

발의연월일: 2021. 7. 20.

발 의 자:유기홍·서동용·김철민

박찬대 • 안민석 • 조오섭

권인숙 · 서영교 · 윤영덕

유정주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는 관련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이러한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

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방세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교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함(안 제41 조).
- 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함(안 제42조제1항).
- 다.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함(안 제42조제2항).
- 라.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경감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함(안 제42조제3항).
- 마.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

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함(안 제45 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지역자원시설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평생교육단체가"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

는"을 "취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취득세"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대해서는 재산세"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	대한 면제) ①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	
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	
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u>취득</u>	취득
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	세를
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	
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②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u>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아니한다.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

<u>각각</u>
,
③
<u>각각</u>
4

- 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지역</u> <u>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한 국유재산의 대한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한정한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u>지역</u>
자원시설세를
⑤
<u>각각</u>
<u>⑥</u>
<u>각각</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
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1. (생략)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나. (생 략)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 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 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 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 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

⑦
1. (현행과 같음)
2 <u>취득하는</u>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 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 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 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 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u>각각</u>
1. • 2. (현행과 같음)
②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 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 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 (생 략)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 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 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 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

<u> 각각</u>
1. • 2. (현행과 같음)
3
صاحاً ما جا
<u>각각</u>
④ (현행과 같음)
세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취득세를

- 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 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 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 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 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 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 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 3) 평생교육단세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 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 2. (생 략)

②
<u>재산세를</u>
③ 평생교육단체가
1.•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 1. (생 략)
-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나.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 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1. (현행과 같음)
2 <u>취득하는</u>
.
가.・나. (현행과 같음)
②

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 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생 략)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u> 득세</u>
<u>재산세</u>
③
<u>대해서는 재산세</u>
<u>.</u>
④ (현행과 같음)
세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u>각각 2021년</u>	<u>각각</u>
<u>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